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2013. 3. 28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학교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학교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진흥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직원의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8. 체육연구논문발표, 연구지발간 및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공로자 표창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신인 발굴 사항에 관한 협조사사항
12. 시·도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
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13. 0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